

의안번호	제 246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

발 의 자	연철흠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9년 8월 13일

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

(연철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8월 13일

발 의 자 : 연철흙, 전원표, 허창원,
송미애, 이옥규, 정상교
이수완

1. 제정이유

-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「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」이 제정되어 시행 중임.(2015. 5.18 공포)
- 주 52시간 노동제 시행과 더불어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여가 문화 조성 및 여가활성화를 통해 충청도민에게 여가가 있는 삶을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정책을 수립·시행 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).
- 도민 여가 활동 실태조사 등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.

- 여가 활성화 사업 및 여가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9조·제10조).
- 도민의 여가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위원회 설치 (안 제11조).
-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(안 제13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」, 「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시행령」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.
- 라. 입법예고 : 2019. 7.26 ~ 2019. 8.14

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이념) 이 조례는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여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하여 도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.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「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충청북도민(이하 “도민”이라 한다)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일과 여가의 조화) ① 도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여가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7조(여가활성화 시행계획) ①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활성화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나 전문가들과 협의를 할 수 있다.

제8조(조사 및 연구) 도지사는 도민여가활동실태조사를 비롯한 여가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여가활성화 사업) 도지사는 도민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2.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
3. 여가교육의 실시
4.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
5.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6. 사회적 약자(장애인, 노인, 저소득층, 다문화 가정, 소외 계층 등)의 여가활동 지원
7. 여가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

제10조(여가교육의 실시) ① 도지사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.

1. 「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
 2.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
 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
 4. 그 밖에 도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 시설
-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다.

제11조(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위원회) 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(당연직)기획관리실장, 문화체육관광국장, 보건복지국장
2. 여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가분야 전문가
3. 여가관련 단체 대표나 종사자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의 안건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,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, 기타 도민 여가와 관련된 사업으로 한다.

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2조(사무의 위탁)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도민 여가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3조(민간단체 등의 지원) 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여가활성화 사업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
2. 여가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
3. 여가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4조(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) 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찾아내어 시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」 제3조를 따른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□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(약칭: 여가활성화법)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조사 및 연구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(직장인의 여가를 위한 휴가사용실태조사를 포함한다)를 비롯한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민간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.
<개정 2016. 12. 20.>

제9조(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
제10조(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활동, 여가 시설, 여가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등 각종 여가정보를 수집·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1조(여가교육의 실시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학교 및 관련 시설 등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, 관련 시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(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3조(여가전문인력의 양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4조(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 장애인, 노인,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5조(민간단체 등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(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(여가산업의 육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